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00
------	------

2017. 4. 2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23일, 김제리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3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7.4.21)상정, 제안설명,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제리 의원)

가. 주문

-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으나 12개월(252일)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대다수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나. 제안이유

-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때 지급하는 공제부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실제로 252일 이상 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395만명에 이르고 누적된 부금은 7,503억원에 이르는 등 많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인 건설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부적절한 처사로 보임
- 따라서, 퇴직 공제부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Ⅲ. 이송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Ⅵ.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건의안의 개요

- 본 건의안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운영중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건설근로자의 근로·고용 현황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조사한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¹⁾에 따르면, 2016년 건설근로자의 일급은 평균 15만 3천원, 연간 평균 근무일은 149일로,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건설근로자 1인당 연간 수입은 2,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인 3,281만원²⁾의 70% 수준임.

1)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1년 이내 근로기록이 있는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구직환경, 교육훈련 경험, 임금, 근로실태, 삶의 만족도 등 고용 및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

2)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는 한 달간 평균 2.2개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대부분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고 단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설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2014년 기준 31만 4천명으로 전체 98만 8천명의 31%³⁾를 차지했음.
- 또한 50세 이상인 장년층 건설근로자는 57.1%로 근로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향후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지는 것을 감안할 때 장년층 근로자는 계속 증가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밖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는 근로자가 18.7%나 존재했으며, 건설현장의 휴게시설이 별도로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38.6%로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

- 정부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일용·임시직이 다수인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중임.
-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만큼 해당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

3) 2015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고, 12개월(연 252일)⁴⁾ 이상 일한 근로자에 한하여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회를 통해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음.

- 타 산업에 비해 근무일수가 적고 공제금액의 액수도 1일 4천원으로 공제금 수령기준인 연 252일 근무시 퇴직금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수십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몇백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퇴직 후 생활보장이 불가능한 현실임.

< 공제부금 적립기간별 피공제자 현황 >

(‘16.12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계	252일이상	252일미만
계	인 원	4,845,467	786,674	4,058,793
	비율	100	16.24	83.76
	금 액	2,734,579	1,957,186	777,393
	비율	100	71.57	28.43
60세미만	인 원	3,692,885	652,007	3,040,878
	비율	100	17.66	82.34
	금 액	2,238,843	1,654,504	584,339
	비율	100	73.90	26.10
60세이상 65세미만	인 원	503,369	78,588	424,781
	비율	100	15.61	84.39
	금 액	288,139	197,926	90,213
	비율	100	68.69	31.31
65세이상	인 원	649,213	56,079	593,134
	비율	100	8.64	91.36
	금 액	207,597	104,756	102,841
	비율	100	50.46	49.54

4)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1일을 1개월로 간주함.

제17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 공제부금의 적립기간별 피공제자 현황⁵⁾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는 전체 485만명 중 83.76%인 406만명이며, 공제 부금액으로는 약 7,800여억원임.
- 이와 같이 현행 법률에 의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20% 미만인 극히 적은 인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의 근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현재 국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및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설노조 및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퇴직금 지급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또한,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가장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의 인상이었음. 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근무하는 다수의 건설근로자들이 퇴직후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 완화와 더불어 공제부금의 인상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건설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책 마련 또한 필요해 보

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임.

- 건설근로자들의 현실적인 근로 현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시·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건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1700
----------	------

발의년월일 : 2017년 3월 23일

발 의 자 : 김제리·강구덕·남창진·김춘수·
최영수·오봉수·김광수(노원)·
김인제·박운기·장홍순·유찬종·
이순자 의원(12명)

1. 주 문

-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으나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대다수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때 지급하는 공제부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실제로 252일 이상 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395만명에 이르고 누적된 부금은 7,503억원에 이르는 등 많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인 건설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부적절한 처사로 보임
- 따라서, 퇴직 공제부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지급하는 공제부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실제로 252일 이상 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395만명에 이르고 누적된 부금은 7,503억원에 이르는 등 많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인 건설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부적절한 처사로 해석된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장년층은 늘어가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을 꺼리고 있어 지급조건인 252일 이상 근로를 채우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분들의수록 퇴직공제금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분들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퇴직 공제부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